**북한 국가기관체계의 구성**

**: 중앙인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역할**

**Ⅰ. 국가기관체계의 구성과 역할**

* 북한의 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체계는 1) 최고인민회의, 2) 국무위원회,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 내각, 5) 지방인민회의, 6) 지방인민위원회, 7) 검찰소와 재판소 등으로 구성
* 1) 주권기관체계, 2) 행정기관체계, 3) 재판 및 검찰기관체계 등으로 구분

1. **주권기관[[1]](#footnote-1)체계**
2. 중앙조직 : 최고인민회의 / 국무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 지방조직: 지방인민회의 / 지방인민위원회
4. **행정기관체계**
5. 중앙조직 : 내각
6. 지방조직 : 지방인민위원회
7. **재판 및 검찰기관체계**
8. 중앙조직 : 중앙재판소 / 중앙검찰소
9. 지방조직 : 지방재판소 / 지방검찰소

**Ⅱ. 1948년 국가기관체계 : 인민회의-인민위원회 체제**

*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최고권력’인 최고인민회의(입법),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인 내각(행정), 재판소 및 검찰소 등으로 구성
* 최고인민회의 : 내각을 구성하고 최고재판소를 선거하고 검사총장 임명하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고 명기 -> 헌법상 최고인민회의의 우위성
* 그러나 실질적 권력행사 측면에서는 내각 수상의 힘이 강한 국가기관체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대부분 보유한 반면, 내각 수상은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중 실질적인 권한을 함께 보유

**Ⅲ. 1972년 국가기관체계 :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주석과 그 주석을 최고 수위로 하는 중앙인민위원회 설치, 이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2]](#footnote-2)
*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의 최고주권기관
* 국가주석직을 창설하며 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과 내각 수상의 권한 중 중요한 권한 대부분이 국가주석에 이관
* 내각이었던 정무원은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에서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그 지위 격하

: 내각 권한이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에게 이관 -> 단순한 정책 집행권만 보유

: 사업 시행조차도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하에 수행

* 최고인민회의 권한 축소 : 내각조직권, 대사권 및 행정구역 개편권 등 -> 신설된 중앙인민위원회에 이관
* 중앙인민위원회 :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
* 국방위원회의 등장 :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로 설립되어 중앙인민위원회의 국방분야 임무 보좌, 국방사업지도, 중요 군 인사 참여 등의 역할 담당

**Ⅳ. 1992년 헌법개정 : 국방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분리[[3]](#footnote-3)**

* 1972년 헌법에 의해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 중의 하나로 설립
* 1990년대 초부터 김일성은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노이고, 그의 군대 최고직책(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국방관련 국가기구의 최고직책(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김정일에게 이양하기 시작
*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의 기관으로 확대 개편 -> 스스로 위원장직 취임 및 김정일 제1부위원장 임명
* 1992년 헌법 : 국방위원회를 공화국 주석의 바로 다음에 그리고 중앙인민위원회에 앞서 독립된 절로 자리 잡게 함과 동시에 국방위원장도 최고인민회의에서 별도의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격상.
  + - 김정일 후계체계의 강화를 위한 조치
    - 1998년 9월,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 폐지, 국방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권력기관’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권한 부여됨

**Ⅴ. 1998년 국가기관체계 :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폐지**

* 국가주석직 폐지, 주석에 집중되었던 권력을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 총리 등에게 분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국가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의 폐지로, 기존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에 속하던 조약 비준 및 체결권, 외교대표의 임명 및 소환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수여권, 대사권과 특사권 등을 이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4]](#footnote-4)
* 기존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었던 정무원 ->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의 기관’인 내각으로 확대개편

**Ⅵ. 2009년 헌법 개정: 국방위원회의 격상**

* 국방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지위 명문화 : 국가의 영도자로서 국가전반사업을 지도하는 임무와 권한과 과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특사권 행사, 외국과 맺은 중요조약 비준 또는 폐기 권한 보유
*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권한이 축소, 대신 외국 의회와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할 수 있는 대외사업권 부여

**Ⅶ. 2016년 국가기관체계 : 김정은 권력 승계와 국방위원회의 폐지, 국무위원회 신설**

* 국방위원회 폐지 -> 국무위원회 신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직에 등정
* 국무위원장 : 북한의 ‘최고영도자’이자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회통솔 = 기존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권한
* 국무위원회 :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

**Ⅷ. 2019년 헌법 개정 : 국무위원장 중심 국가영도체계**

* 국가기구는 헌법상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로 분리
*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인적 차원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회 산하로 편입”[[5]](#footnote-5)
* 2019년 기준, 국무위원회의 위상이 1972년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상과 근접

**Ⅸ. 2019년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1. **국무위원회**
   * +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①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 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 -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1. **최고인민회의**

*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도 립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⑦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⑨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⑩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 **내각**

* 제11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Ⅹ. 결론**

* 중앙인민위원회(->국방위원회 ->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위상에 차이가 존재
*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보다 더 높은 위상을 보유.
* 즉, 독립된 기관이나 기관의 지위에 있어서는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 국무 위원회)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짐
  + - 최고인민회의를 org1 없는 org2로 볼 수 있을 것 같음
*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성립이후 헌법상 우위를 점했으나, 중앙인민위원회의 등장 이후 그 위상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위상이 변동됨을 확인할 수 있음
*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은 김일성 권력의 공고화 및 이후의 권력 세습 과정에서 명칭에 변경이 존재하며, 권력세습에 있어 수단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조사결과 각 기관별 위상을 반영한 국가기관 조직도 (별도 파일로 첨부)

**Reference**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22. *2022 북한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김갑식 외. 2021. *2021 북한지식사전*,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법제처 교류협력담당관실. 2020. *북한의 경제법제소식-2019년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서울: 법제처.

박영자 외. 2018.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서울: 통일연구원.

정성장. 2011.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파주: 한울아카데미.

강응천. 2020. “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주권기관과 행정기관 관계로 본 북한 정치사”. *현대북한연구*,

23(1), pp. 39-74.

이수원. 2016.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 역할 변화 분석”. *통일과평화*, 8(2), pp. 149-180.

김갑식. “북한의 헌법상 국가기관체계와 남북국회회담 카운터파트로서의 최고인민회의의 기능과 역할”.

이주철.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구”.

20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1. 북한식 용어로, “사회에 대한 계급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권활동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인민 가운데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서울: 통일연구원, p. 32. [↑](#footnote-ref-1)
2. 강응천, 2020, “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주권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로 본 북한 정치사”, 현대북한연구, 23(1), p. 61. [↑](#footnote-ref-2)
3. 정성장, 2011, *현대 북한의 정치 : 역사･이념･권력체계*, 파주: 한울아카데미. p. 333-341. [↑](#footnote-ref-3)
4. 김갑식, “북한의 헌법상 국가기관체계와 남북국회회담 카운터파트로서의 최고인민회의의 기능과 역할”. [↑](#footnote-ref-4)
5. 김갑식, “북한의 헌법상 국가기관체계와 남북국회회담 카운터파트로서의 최고인민회의의 기능과 역할”. [↑](#footnote-ref-5)